



예 천 군



수신 관내 공동주택 귀하
(경유)

제목 「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(2023. 9. 1.)」 정정 알림

1. 도 건축디자인과-19265(2023.08.17.)호, -20687(2023.09.01.), -21289(2023.09.08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위호와 관련하여 2023. 9. 1일자로 개정된「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」제47조의2제2항이 제43조와 중복되는 자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바랍니다.

□ 정정 내역

정 정 전	정 정 후
제47조의2【공사·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】 ② 제1항에 따른 낙찰방법은 전체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다 득표한 방법으로 선정토록 하며,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·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제8호 및 제8-1호 서식에 따른다.	제47조의2【공사·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】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공사·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제8호 및 제8-1호 서식에 따른다.

※ 도 홈페이지(<https://www.gb.go.kr>) 알림마당 정정 게시

붙임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(정정) 1부. 끝.

예 천 군



주무관

박서원

공동주택팀장

황우섭

건축과장

전결 2023. 9. 11.

권영익

협조자

시행 건축과-35880

(2023. 9. 11.)

접수

우 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

/ <http://www.ycg.kr>

전화번호 054-650-6947

팩스번호 054-650-6359

/ seowon4959@korea.kr

/ 대국민 공개

믿고 찾는 농·특산물! 인터넷 쇼핑물 「예천장터」